

의 안 번 호	제 95 호
의결 년월일	1999. 5. 19.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발 의 자	김 연 정 의원외3인
제 출 년 월 일	1999. 5. 19 .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95
------	----

제안년월일	1999년 5월 19일
제안자	김연정의원외 3명

1. 수정이유

- 군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때에
- 모든 군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생활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보은군 체육 발전에 기여코저함.

2. 주요골자



가.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으로 한다.

나. 제4조(기금의용도),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제5조(기금의운용관리)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⑤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 한다.

라. 제7조(위원회의기능)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마. 제10조(기금의운용)중 적립금을 상향조정

“5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

3. 수정안 : 붙임참조



수신 보은군의회 의장

1995. 5

제목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체육진흥
기금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 끝.

발의자 : 김 연 정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김연정' (Kim Yeon-jeong).

(찬성의원서명 : 붙임 참조)

■ 제안설명

- 김연정 의원입니다.
- 의원여러분께서는 기재부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 군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로 한다.
- 안 제3조(기금의재원) 제1항중 “적립기금”을 “기금조성”으로, “조성한다”를 “한다”로 하고
- 안 제4조(기금의용도) 제1항중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를 “사업에 한하여”로 하고, 동항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안 제5조(기금의운용관리)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 안 제7조(위원회의기능)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 제10조(기금의운용)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금으로”를 “적립금이”로 하고 “적립기금”을 “적립금”으로 한다.
- 안 제14조(관리규정의준용등) 제1항중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를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 한다.

안 제3조(기금의재원) 제1항중 “적립기금”을 “기금조성”으로, “조성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기금의용도) 제1항중 “사업또는 활용목적에”를 “사업에한하여”로 하고 동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안 제5조(기금의운용관리)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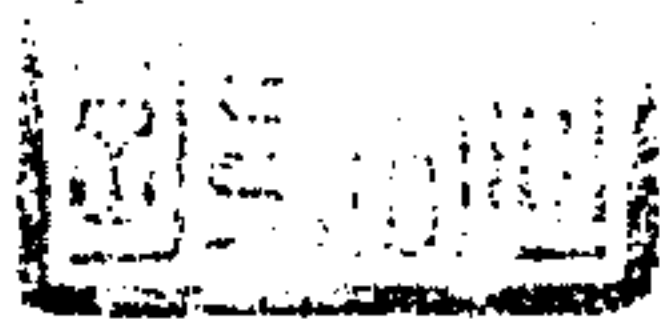
⑤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안 제7조(위원회의기능)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0조(기금의운용)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금으로”를 “적립금이”로 하고 “적립기금”을 “적립금”으로 한다.

안 제14조(관리규정의준용등) 제1항중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를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u> <u>보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u> <u>효율 적으로</u>
제3조(기금의재원) ① <u>적립기금은</u> <u>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3(생략)	제3조(기금의재원) ① <u>기금조성은</u> <u>한다.</u> 1~3(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u>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u> 1~5 (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용도) ①..... <u>사업에 한하며</u> 1~4(제정안과 같음) 5.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및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제정안 5호와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④(생략) <신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④(제정안과 같음) ⑤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질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환수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생략) ②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운용) 제5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은 적립기금의 총액이 5억원이 될 때 까지는 수익금의 전액을 적립금으로 하며 10억원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금으로 10억이상이면 수익금중 연간 운용기금을 제외한 잔액은 <u>적립기금으로</u> 적립한다.	제10조(기금의운용)10억원..... <u>적립금이</u> <u>적립금</u>
제14조(관리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관리규정의 준용등) ①..... <u>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u>

의 안 찬 성 의 원 서 명

성 명	서 명	(인)
김 기 행	김	
송 인 우	(송인우)	
김 인 수	김	